

5. 건축사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735호 1999. 1. 29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건설분야 기사1급 자격증취득자는 건축분야에서 7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건설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자는 실무경력이 있어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어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자가 자격취득후 9년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 7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보로 근무한 자.

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이상 건축사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회보